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 검 토 보 고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07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11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11
2. 결의안의 발의 배경	11
2. 결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12
※ 참고자료	19

I. 제안 및 회부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10인
2. 제안일자 : 2025년 4월 15일
3. 회부일자 : 2025년 4월 16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1조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유엔 헌장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유엔은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할 의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를 위하여 유엔과 협력하여 합동 및 개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판 위키리크스’라 불리는 2024년 11월 15일 리일규 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무참사가 공개한 북한 외무성-재외공관간 외교전문

12건은 해외공관에서 김정은에게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를 직접 보고하고, 김정은이 이에 대해 직접 지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인권증진 활동이 김정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개된 외교전문은 2003년 4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 2003/10호 채택 이후 해마다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2016년부터 북한이 표결 요구를 포기한 이유가 북한에 따르면 “적들의 끈질긴 정치경제적압력, 회유책동으로 우리 지지동정하던 발전도상나라들 적편으로 기울어지는 상황 조성, 일부 나라들 우리 립장에 공감, 약속하고도 적편에 넘어간 관계로 우리와 마주않는것 꺼려하면서 인권문제 아닌 다른 문제 토의에도 적극성 보이지 않고있는 등 전반적 쌍무관계발전에 부정적영향 미치고 있”기 때문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47개 이사국은 올 3월 21일 유럽연합(EU)과 호주가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A/HRC/58/L.2)를 4월 3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습니다. 제 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는 국군포로와 외국인 억류자 관련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 및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서한에 대한 북한의 실체적 내용이 없는 답변(前文 문단 20), 2024년 1월 북한의 통일 지향 포기 선언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前文 문단 23), 국제형사법상 노예화에

의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할 수 있는 북한의 제도화된 강제노동(前文 문단 25), 아동권 침해(본문 문단 1(g))에 대한 우려, 북송 탈북자의 자의적 구금 중단(본문 문단 2(g) 및 2(k)),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억류 외국인 관련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의 즉각적 석방(본문 문단 2(1)),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거나 인권침해를 부채질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 자제(본문 문단 32),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종식(본문 문단 34) 권고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는 또한 2014년 이후 모든 유엔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처럼 북한의 살해, 절멸, 노예화, 강제이주, 구금, 고문, 강간 및 성폭력, 박해, 강제실종,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에 의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사법처벌을 포함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확인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본문 문단 7).

한편, 한미일 3국은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2024년 10월 18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여 북한 내부의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인권 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추진하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탈북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확대하며, 납북자 및 억류자 그리고 미송환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2025년 2월 15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내에서,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7일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은 북한에 대해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하여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024년 11월 25일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해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하여 국제 사회의 인권과 인도적 우려 사안들을 다루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상 인권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를 비롯한 유엔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환영하며, 북한이 이를 비롯한 유엔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를 받아

들이고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 문제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로서 정부가 작년 7월부터 공식인 「북한인권법」 제9조에 따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EU 및 호주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초안 작성국(co-penholder)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를 권고합니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EU 등이 매년 4월에 채택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전년도 12월, 매년 12월에 채택되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동년 6월에 결의안에 추가할 내용에 관한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위한 북한인권 단체,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내년 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시 채택될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에 작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 79/181호에 이미 포함된 내용 중 특히 납북자와 가족의 강제분리(前文 문단 23), 북한의 계속된 제네바협약에 따른 국군포로 송환 의무 위반(前文 문단 24), 이산가족의 강제분리(前文 문단 25),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적 송환 권고(본문 문단 3), 북송 탈북난민에 대한 북한의 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본문 문단 6 및 19(g)),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과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본문 문단 19(m)) 등이 추가될 것을 권고합니다.

5. 대한민국 국회는 EU가 제출하여 채택된 2018년 3월 23일 미얀마 인권 결의 37/32호, 동년 9월 27일 미얀마 인권 결의 39/2호, 2019년 3월 22일 미얀마 인권 결의 40/29호에서 거명된 억류 로이터 소속 와 론(Wa Lone) 기자와 초 소에우(Kyaw Soe Oo) 기자가 2019년 5월 7일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된 것에 주목하여 지난 10여년간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석방될 때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세 선교사를 거명하여 석방을 촉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올 12월 채택될 유엔 총회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 및 내년 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시 채택될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보고前 쟁점목록(LoI PR)에 따른 제3차 정기 보고서 제출(前文 문단 18), 2024년 1월 북한의 통일 지향 포기 선언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위반 및 한민족의 자기결정권 부인과 가족의 강제분리 심화 확인(前文 문단 23), ‘유일적 령도 체계 확립의 10대원칙’ 및 형법상 ‘반국가 및 반

민족범죄'의 폐지 및 적지물처리법, 인민반조직운영법, 군중신고법, 국가비밀보호법의 개정 또는 폐지(본문 문단 1(a) 및 2(a)), 성경 등 종교문헌 소지와 배포 및 종교인의 기도 행위 처벌 중단(본문 문단 2(a)), 북송 재일교포의 강제실종 해결 및 이동의 자유 보장(본문 1(i) 및 2(h)),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반을 초래하는 북한과의 국경 안전, 사범공조,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에 관한 양자 조약의 종료 또는 개정(본문 문단 6), 북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수락 권고의 이행(본문 문단 28), COI가 제안했던 인권침해 조사기록 및 각국 국내로의 접근 가능한 정보 방송 노력을 포함한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확대 권고 등이 추가될 것을 권고합니다.

7. 대한민국 국회는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작년 4월 4일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55/21호에 따라 올 9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2014년 COI 보고서 발간 이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업데이트를 담고 COI 권고들의 이행을 점검하는 종합보고서(COI 업데이트 보고서) 및 COI 업데이트 보고서 제출 후 열릴 확대 상호대화(enhanced interactive dialogue), 그리고 작년 12월 17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79/181호에 따라 올 9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릴 북한인권 고위급 전체회의(high-level plenary meeting)가 북한 반인도범죄와

중대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활용될 것을 촉구합니다.

8.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유엔 인권 특별절차와 조약기구 중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언급된 것처럼 북한의 실체적 내용이 없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대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 등에 대한 지정 기여(earmarked contribution) 확대 검토를 권고합니다.

9. 대한민국 국회는 올 2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제27차 므타(MIKTA) 외교장관회의」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인 MIKTA 의장국 활동을 개시한 것을 유념하며, 올 9월 제80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개최될 「제28차 므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하여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10. 대한민국 국회는 작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 79/181호의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적 송환 권고

및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성명’의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 재확인을 감안하여 미국과 다른 우방국의 고위 정부 관리 및 외교관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을 면담하듯이 한국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가족을 면담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안이유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47개 이사국은 올 3월 21일 유럽연합(EU)과 호주가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A/HRC/58/L.2)을 4월 3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음.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환영하고 북한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조속한 임명과 대한민국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초안 작성국(co-penholder) 참여 검토, 매년 6월 및 12월 외교부와 통일부의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추가내용 관련 북한인권 단체, 전문가와의 간담회 정례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내용 추가, 올 9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COI 업데이트 보고서 제출 및 확대 상호대화과 제80차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고위급 전체회의를 통한 국제적 관심 환기, 유엔 인권 특별절차와 조약기구 중 북한의 중대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 등에 대한 지정기여(earmarked contribution) 확대, 올 9월 제80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개최될 「제28차 므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미국과 다른 우방국의 고위 정부 관리 및 외교관의 한국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면담을 권고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은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를 환영하고 북한이 결의안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조속한 임명 및 대한민국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초안 작성국 참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북한 내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며,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유엔 인권이사회·총회에서의 후속 논의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및 국제적 관심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임.

2. 결의안의 발의 배경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는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및 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가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있음.

유엔 총회 결의는 북한 내의 인권침해 및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포괄적 내용을 담아

왔으며, 인권이사회 결의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하나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¹⁾의 임명 또는 임무 갱신을 요청하고, 북한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25년 4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표결 없이 모든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는 방식인 컨센서스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여 올해로 1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²⁾되었음.

동 결의안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환기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 의지를 갖고 있음을 천명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결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결의안 주문 제1호는 대한민국 국회가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을 환영함과 동시에, 북한이 매년 유엔에서 채택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들을 수용하고 그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방문, 탈북민 면담 등의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차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각각 제출하며, 유엔 사무총장도 매년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함.

2) 유엔 인권이사회(舊 인권위원회 포함)는 2003년(2006 및 2007년 제외)부터 매해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컨센서스로 채택해 옴.

2025년 4월 3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된바, 해당 결의에는 북한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이 추가되는 등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이 강화되었고,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문안이 추가됨. 또한,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됨.³⁾

결의안 주문 제2호 및 제3호는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제도적·외교적 대응 강화를 권고하는 내용임.

우선, 안 주문 제2호는 「북한인권법」 제9조4)에 규정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⁵⁾가 작년 7월 이후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동 직위는 북한 인

3) 외교부 대변인 논평,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을 환영한다」, 외교부 보도자료(2025.04.03.)

4) 「북한인권법」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역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현황>

연 번	성 명	임 기	주요 이력
1	이정훈	2016.9.13.~2017.9.12.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	이신화	2022.7.19.~2024.7.18.	고려대학교 교수

권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창구로서 법적 근거가 명시된 만큼, 장기 간의 공백은 국제적 협력 활동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회의 권고는 정부가 인권 외교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EU 및 호주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초안 작성국(co-penholder)⁶⁾에 참여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음.

안 주문 제3호는 이러한 국제적 협력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유엔 결의안 논의 일정에 맞추어 국내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의 정례적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즉, 유엔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정부차원에서 북한 인권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결의안 초안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이해됨.

결의안 주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 결의의 구체적 문안 강화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북한 인권 결의의 채택을 환영하는 차원을 넘어,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종교의 자유, 강제송환 문제 등 북한 인권 상황의 세부 현안들을 유엔 결의안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 데 초점을 두

6) 북한 인권 결의 초안 작성국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문안 협의를 진행하는 국가로, 현재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의 경우 EU 및 호주가 공동 초안 작성국으로 참여 중임.

고 있음.

안 주문 제4호는 기존 유엔 결의안에 포함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강제낙태·영아살해, ILO 협약 비준 권고 등을 차기 결의안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고, 안 주문 제5호는 미얀마 인권 결의의 선례⁷⁾를 들어, 북한에 장기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인⁸⁾을 명시적으로 거명하여 석방 촉구 문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안 주문 제6호는 국제인권규약 이행, 남북기본합의서 위반 문제, 종교·이동의 자유 보장, 강제송환 관련 조약 개정, 시민사회 활동 지원 확대 등 보다 구조적·제도적 차원의 권고사항을 결의안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안 주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적 범위를 확대·구체화하여, 반복적 문제 제기와 국제적 압박 유지, 특정 피해자 구제 촉구, 구조적·제도적 개선 권고라는 다층적 접근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려는 국회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결의안 주문 제7호는 유엔 차원에서 진행될 북한 인권 관련 후속 논의들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7) 1990년 미얀마 군부의 선거 결과 부정 및 아웅산 수치 여사 가택연금 사건 등을 계기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부터 EU 주도로 매년 미얀마 인권 결의를 무투표('18-'20년에는 표결 진행)로 채택 중이며, 2018년(37/32호, 39/2호) 및 2019년(40/29호) 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 결의에는 억류된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Wa Lone, Kyaw Soe Oo)의 즉각 석방 촉구 내용이 포함됨. 해당 로이터 기자들은 미얀마 국적으로, 미얀마 라카인 지역 로힝야족 살해 의혹(라카인 지역에서 10명의 로힝야족이 초법적 처형을 당했다는 의혹) 관련 취재를 하던 중 2017년 12월 공공기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약 1년 6개월간 수감되었다가 2019.5.7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됨.

8) 현재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13.10월), 김국기('14.10월), 최춘길('14.12월) 등 3인이 북한에 10년 이상 억류 중임.

구체적으로, 지난해 4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55/21호⁹⁾에 따라 2025년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¹⁰⁾ 업데이트 보고서 및 그 후속 절차인 확대 상호대화(enhanced interactive dialogue),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79/181호에 따라 2025년 9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릴 예정인 북한인권 고위급 전체회의(high-level plenary meeting)를 활용하여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문제의식을 환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정례적인 유엔 결의안 채택에 그치지 않고, COI 권고 이행 점검 및 고위급 회의 논의를 통해 북한 인권 의제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참고로, 북한인권 고위급 전체회의는 결의안에서 언급된 예상과 달리 제80차 유엔 총회(2025년 9월)가 아닌 제79차 유엔 총회의장¹¹⁾ 주최로 2025년 5월 20일에 이미 개최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²⁾

결의안 주문 제8호 및 제9호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도적·외교적 채널을 활용하여 북한의 중대 인권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9) (제58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본문 문단 16 中) 인권최고대표가 인권이사회 결의(55/21)에 따라 제60차 인권이사회에 COI 보고서가 발간된 2014년 이후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하고 COI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토록 요청한 것을 환기

10)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는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그 주요 임무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임. 특히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 규명(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음. 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토대로 2014년 2월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함.

11) 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2) 외교부, 「유엔 총회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 개최」, 외교부 보도자료(2025.05.21.)

안 주문 제8호는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와 조약기구(treaty bodies)가 북한의 실질적 협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를 꾸준히 다루고 있음을 주목하며, 특히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¹³⁾,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¹⁴⁾ 등에 대한 지정 기여(earmarked contribution)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 이는 우리 정부가 재정적 기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메커니즘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북한 인권 의제를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안 주문 제9호는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의장국으로서 활동을 개시한 점에서, 오는 9월 제80차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될 예정인 제28차 MIKTA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고 있음. 특히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견국 협의체인 MIKTA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압박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임.

안 주문 제8호 및 제9호는 국제기구 지원과 다자협약체 외교라는 두

13)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GEID)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강제·비자발적 실종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 유엔 인권위원회(現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피해자의 행방을 규명하고 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음. 이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활동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기구의 하나임.

14)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은 1991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을 조사·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기구로서,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과 함께 개별 사건 심사와 제도 개선 권고를 수행하고 있음.

축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제기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다만, 외교부는 MIKTA의 경우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도전과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중견국간 협의체로, 회의별 논의 의제는 회원국 간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만큼 MIKTA 의제로의 포함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결의안 주문 제10호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중에서도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미국과 우방국의 고위 정부 관리 및 외교관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을 면담해 온 선례를 참고하여 한국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도 국제사회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면담함으로써, 이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현안으로 재조명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외교부는 동 결의안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263

제58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요지 (비공식 번역 요약)

1 전 문

- ① 유엔 헌장, 세계인권 선언, 인권 협약 등을 존중
- ②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기존의 북한인권결의를 상기하고, 결의 이행을 촉구
- ③ 유엔 총회 결의 60/251(인권이사회 설립 결의) 3항을 유념
- ④ 인권이사회 제도 구축에 관한 결의 5/1,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자의 행동원칙 결의 5/2를 상기하고,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동 결의에 따라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
- 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상의 권고 이행 중요성 강조
- ⑥ COI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 상당수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북한내 인권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와 책임규명 부족에 깊이 우려
- ⑦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북한의 책임을 상기하며, COI가 북한 지도층에게 인도에 반하는 죄를 예방, 억제하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했음을 상기한 유엔 총회 결의(79/181)에 유의
- ⑧ 북한이 인도주의 기구의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은 접근에 제약을 가함에 따라 북한의 불안정한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 우려
- ⑨ 코로나19 팬데믹의 세계적 발병과 2022년 5월에 발표된 국내적 발병 이후 취해진 불균형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들에 따른 북한의 인도적 상황 악화와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깊이 우려하고, 인도적 상황에 대응함에 있어서 대북 적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국 및 지원 필요 주민에 대한 접근성, 관련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의 중요성을 강조
- ⑩ 팬데믹 기간 중 부과되고 여전히 유효한 어떠한 제한도 필요하고, 비례적이고, 비차별적이고, 한시적이고, 투명하며 북한의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포함한 국제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 엄격히 부합해야 함을 상기
- ⑪ 북한이 국내 정책에 따라 주민의 복지와 식량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계속해서 전용하는 점을 규탄하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2321, 2371, 2375, 2397에 따라 주민의 복지와 타고난 존엄성을 존중할 필요성 강조

- ⑫ 적절한 식량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등 전 인구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면서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존중하는 것은 북한의 책임임을 재확인
- ⑬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에게 방치, 인권침해, 착취, 폭력 등의 위험요소가 있으며, 이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아동권리위원회 보고서상 의견을 상기
- ⑭ 북한이 제37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결과보고서의 모든 권고들을 이행할 것을 독려하며, 북한이 2018년 12월 장애인권리 협약 1차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 1차 보고서상 문제사항에 대해 북한이 2023년 12월 서면 답변을 제공한 점을 평가하며 주목
- ⑮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참여를 인정하고, 북한 내 심각한인권 침해 해소를 위해 권고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
- ⑯ 북한 내에서 독립적인 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북한에 기반한 시민 단체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과정에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점에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유의
- ⑰ 북한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
- ⑱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감시하는 협약기구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북한이 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협약기구에 정기적으로 적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강조
- ⑲ 남북자 문제 및 모든 납북자의 즉각적인 송환 문제의 지속 증가하는 중요성과 시급성에 중대한 우려와 함께 주목하고, 납북자 및 가족들이 장기간 겪어온 고통과 2014년 5월 북한과 일본 간 정부차원의 협의에 기초하여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조사가 착수된 이래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음과 북한의 강제실종 실무그룹 및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수많은 서한에 대한 동일하고 불충분한 답변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모든 강제 실종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듣고, 피해자 가족들에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며, 특히 일본과 한국의 모든 납북자의 즉각 송환 등 조속히 모든 납북자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
- ⑳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 혐의와 건강 및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여타 유엔 회원국 국민에 대한 문제와 북한의 강제실종 실무그룹 및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서한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 우려와 함께 유의
- ㉑ 북한과 건설적으로 외교에 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준비를 환영하고, 북

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② 전세계 영향받은 한국인을 포함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8.9.19.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독려하며, 관련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접근하기 쉬운 장소 및 정규 시설에서의 상봉·정기 서신교환·화상상봉·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시·정례 상봉 및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
- ③ 북한이 2024년 1월 더 이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이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와 함께 유의
- ④ 북한이 강제노동 등을 통한 인권 침해와 착취를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함에 따라 성평등, 여성·여아 권리 존중 등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본질적으로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불균형적인 국가 재정이 군사적 비용으로 할당되어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와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등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 보호, 실현하지 못함을 우려와 함께 유의
- ⑤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2024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내 및 북한에 의한 강제노동이 제도화되고, 아동이 강제노동 배치 및 동원에 취약하며, 북한의 강제노동이 몇몇 사례에서는 소유 수준에 달하고 이는 국제형사법상 반인도범죄인 노예화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와 함께 유의
- ⑥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등 인권이사회와 완전하고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
- ⑦ 점진적 국경 개방에 유의하고 외교단, 유엔 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 시민사회의 비차별적인 복귀와 국제사회와 유의미한 대화 재개를 촉구

2 본 문

- ①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며, 북한인권 COI의 보고서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특별보고관에 의해 진행 중인 모니터링과 기록 작업에서 밝혀진 아래 등 사항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
 - (a) 정보의 절대적 독점과 조직된 사회 생활에 대한 완전한 통제 등 만연한 엄격한 제한과 모든 주민들의 사생활에 침투된 국가에 의한 자의적 감시에 따라 강제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부정

- (b) 성별 시스템에 따른 차별, 장애 및 여성에 대한 차별
- (c) 이동의 자유 관련 권리 위반
- (d) 식량권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및 생명권 관련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위반
- (e) 전체 형벌 시스템 및 모든 억류 장소에서 자행되는 생명권 위반,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및 여타 중대한 형태의 성폭력, 정치적·종교적·성적 지향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 및 광범위한 집단 처벌 관행
- (f) 여성과 여아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와 유린
- (g) 아동 인권 및 아동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 /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 대한 보고
- (h) 체포, 억류, 납치에 따른 강제·비자발적 실종
- (i)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자행되는 조직적 납치, 송환 거부 및 그에 따른 강제실종

② 북한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법적 및 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COI 보고서 및 유엔 총회 결의 79/181상 관련 권고 이행을 통해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

- (a) 독립적 언론 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포함한 관련 법 및 관행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앙의 자유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확보
- (b) 성별 시스템에 따른 차별 종식 및 양성평등과 성에 기반한 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 (c) 이동의 자유 확보
- (d) 인도적 지원이 장애인, 노인, 억류 상태의 개인, 아동, 여성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도록 인도적 지원 관련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식량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증진
- (e)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
- (f) 지원 제공에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유권과 백신 접근의 중요성을 인정
- (g) 강제노동 관행, 고문 사용 등 전체 형벌 시스템 및 모든 억류 장소에서 자행되는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며,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한편, 공개 처형 등 구금 중 자의적 처형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여성·여아 등 강제송환된 주민의 자의적 구금

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를 위한 사법 분야 개혁 확보

- (h) 즉각적인 송환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당사자들과의 건설적인 대화 등을 통한 납북 및 강제실종 문제의 신속한 해결
 - (i) 고령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상봉의 즉각적인 재개 확보
 - (j) 연좌제 관행 즉각 폐지
 - (k) 북한내 이동의 자유 및 망명할 목적을 포함하여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송환된 여성·여아 등의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향유 보장
 - (l) 북한내 억류된 여타 유엔 회원국 국민에 대해 북한이 당사국인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 접견·통신권을 포함한 보호 및 생존 확인, 가족과 연락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제공하고,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어있는 자들을 즉각 석방
 - (m) 북한으로 추방당하거나 송환된 북한 주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과, 동인들이 강제실종·자의적 처형·고문 및 다른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지 않고, 특히 억류된 여성, 아동, 장애인을 포함한 동인들의 상태와 처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보장
- ③ 만연한 강제노동 활용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위반 및 종종 정부 수입 창출 목적으로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근로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유엔 총회 결의(79/181)를 상기
- ④ 안보리 결의 2371(2017), 2375(2017), 특히 유엔 회원국이 2017.12.22로부터 즉시 그러나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 자국 관할권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주민 및 해외 북한노동자를 감시하는 북한 정부의 모든 안전감 독주재판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결정한 안보리 결의 2397(2017)을 상기하고 모든 국가에 난민법 및 인권법 등에서 금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국민이 아닌 경우는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북한으로 송환된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 인권을 보호, 존중, 증진할 것을 촉구
- ⑤ 북한의 영토내외에서 여타 유엔 회원국 국민에게 자행하는 고문 및 다른 잔혹하고 비인도적·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약식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강조한 유엔 총회 결의(79/181)를 상기하며, 북한이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
- ⑥ 북한에 송환된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의 상황 및 이들에게 가해진 제재와 관련 COI와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밝힌 사안들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특히 국경간 이동 재개를 고려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고, 난민 신청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며 유엔난민기구(UNHCR)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접근을 허용하고, 북한정부와의 난민, 망명 신청자, 여타 북한주민 관련 정보 공유를 자제함으로써 적절한 국제적 보호 보장을 촉구

- ⑦ 수십년동안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그리고 지도층의 효과적 통제하에 있는 기관에 의해 북한내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되어 왔다고 믿을 만한 증언과 정보가 있다는 COI의 조사 결과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재언급
- ⑧ 북한이 인도에 반하는 죄의 책임자들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와 관련 전문기구를 포함한 유엔 사무국, 지역기구와 포럼, 시민사회와 재단 및 여타 이해관계자가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 특히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독려
- ⑨ 북한 관련 안보리 논의 재개를 환영하고, 북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를 효과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제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안보리가 COI의 결론 및 권고사항을 지속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 유엔 총회 결의(79/181)를 환영
- ⑩ 북한에 대한 접근이 확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까지 펼쳐온 활동과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
- ⑪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
- ⑫ COI 및 유엔 총회 결의(79/181)의 권고를 상기하고, 지속적 의사소통, 홍보 및 아웃리치 활동 등을 통해 심각한 북한인권상황을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하며,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관련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
- ⑬ 인권이사회 결의(52/28, 55/21)에 따라 발표된 북한인권 책임규명 증진에 대한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환영하고, 북한인권서울사무소를 포함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노력을 평가하며, 여타 관련 메커니즘의 경험을 고려하고 국내·지역·국제 메커니즘과 시민사회, 피해자, 생존자와 적극 관여할 것을 독려
- ⑭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 강화를 지속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 또한 환영하며, 미래 형사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독려
- ⑮ 북한인권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의 권고 이행 등을 위한 역량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
- ⑯ 인권최고대표가 제61차 인권이사회에서 진전사항에 관한 구두보고를 하고 제64차 인권이사회에서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하고, 인권최고대표가 인권이사회 결의(55/21)에 따라 제60차 인권이사회에 COI 보고서가 발간된 2014년 이후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하고 COI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토록 요청한 것을 환기

- ⑰ 특별보고관 임기를 1년 연장
- ⑱ 인권최고대표에게 제64차 이사회 앞 보고서 내에 북한 책임규명 작업의 강화, 제도화, 진전을 위한 추가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요청
- ⑲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피해자 등과 함께 협의 및 아웃리치 활동을 갖고, 책임규명에 대한 피해자 중심 접근을 보장하고, 이들의 관점을 책임규명 방안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을 요청
- ⑳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COI 보고서상 권고와 책임규명 관련 독립전문가그룹, 특별보고관, 사무총장,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의 이행을 검토할 것을 촉구
- ㉑ 북한인권사무소의 지속적 노력을 독려하고 동 사무소의 인권이사회 앞 정기적 보고를 환영
- ㉒ 북한인권사무소의 독립적 활동, 임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 보유, 관련국과 협력, 보복 또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회원국의 협력 요청
- ㉓ 유엔 총회에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의 후속조치 노력을 보고할 것을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요청
- ㉔ 특별보고관이 COI 권고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노력을 포함하여 임무 수행 관련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 ㉕ 북한에 △지속적 대화를 통해 모든 특별절차 임무 수임자, 특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초청 및 협력, △특별보고관과 지원 인력들에게 제한없는 방북 허용, △특별보고관 등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기술협력 증진을 촉구
- ㉖ 북한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방북을 초청할 것을 독려
- ㉗ 북한이 기존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에서 수락한 권고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실현할 것을 독려
- ㉘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북한이 미가입한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존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에서 수락한 권고의 이행의 진전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인권침해의 해소를 위해 여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하며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및 제2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등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상 의무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

- ②9 전문 기구 등 유엔 시스템, 지역 정부간 기구, 독립 전문가, NGO 등이 특별보고관 및 북한인권서울사무소 등 특별절차 수임자들과 건설적 대화를 하고 협력할 것을 독려
- ③0 COI 보고서가 권고를 제시한 모든 회원국과 유엔 사무국, 지역 기구 및 포럼, 시민사회, 기업 등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
- ③1 모든 회원국, 유엔, 시민단체, 여타 이해관계자 등이 남북대화·국제 납치를 포함해 인도적·인권 상황에 대한 대화와 관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독려
- ③2 북한이 특히 민간인 고통 가중, 인권침해 심화,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경우 국경 및 여타 지역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사용을 자제하고 유엔시스템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북한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건을 촉진하고 국제 직원의 북한내 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
- ③3 유엔 시스템 전체가, 안보리 검토를 포함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조율되고 통일된 방식으로 계속 다루어 나갈 것을 독려
- ③4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폐쇄, 심도있는 제도적 개혁,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종식 등 인권침해 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과 관련이 있는 모든 회원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독려
- ③5 사무총장에게 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서울사무소 관련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게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고, 임무수행자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
- ③6 특별보고관의 모든 보고서를 적절한 조치를 위해 유엔의 관련 기구와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것을 결정. 끝.